

광명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문개정	2006. 8. 29	조례 제1457호(제명개정)
개정	2007. 10. 10	조례 제1553호
	2008. 6. 16	조례 제1588호(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2009. 12. 31	조례 제1700호
일부개정	2010. 11. 25	조례 제1731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1. 6. 8	조례 제1779호
일부개정	2011. 8. 9	조례 제1786호(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13. 12. 12	조례 제1978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4. 8. 14	조례 제2005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7. 6. 20	조례 제2259호(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2017. 6. 20	조례 제2260호(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	2017. 6. 20	조례 제2263호(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8. 7. 31	조례 제2372호(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2018. 8. 30	조례 제2403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9. 12. 20	조례 제2560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20. 3. 25	조례 제259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입”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지방세: 시세, 시세에 덧붙여 부과되는 도세

나. 세외수입: 전액이 광명시 수입금으로 귀속되는 세외수입

2. “은닉재산”이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4항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3. “과년도 채납액”이란 현년도 기준 직전 회계연도가 폐쇄되기 전에 부과되어 채권이 확정된 것을 말한다. 다만, 「지방세징수법」 제32조에 따라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채납액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0. 3. 25]

제3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4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10, 2009. 12. 31, 2013. 12. 12, 2020. 3. 25>

1. 채납액 징수에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임기제, 임시직 공무원

을 포함한다)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게 한 민간인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②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 6. 16, 2011. 6. 8, 2017. 6. 20>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광명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일반회계)을 체납한 사람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광명시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7. 10. 10, 2009. 12. 31>

④ 삭제 <2020. 3. 25>

⑤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 날인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0. 10, 개정 2020. 3. 25>

⑥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장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20. 3. 25]

제4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7. 10. 10, 2011. 6. 8, 2020. 3. 25>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삭제 <2007. 10. 10>
8. 삭제 <2007. 10. 10>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사람에게도 지급한다. 다만,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7. 10. 10>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0. 3. 25]

제5조(지급한도) ① 제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07. 10. 10, 2013. 12. 12, 2020. 3. 25>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동일 건을 수회에 걸쳐 분할 징수한 때에는 이를 여러 건으로 본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의 임기제 공무원(비정규 민간인 임기제 포함)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② 삭제 <2007. 10. 10>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0. 3. 25]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세입징수 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광명시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 3. 25>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3.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전문개정 2007. 10. 10]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0. 3. 25]

제6조의2(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재정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예산법무과장, 회계과장 및 세정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9. 12. 31, 2010. 11. 25, 2014. 8. 14, 2018. 8. 30, 2019. 12. 20>

1. 5급 이상 공무원
 2. 지방세 제도, 예산, 부동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② 위원장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 7. 31>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실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0. 11. 25>

[본조신설 2007. 10. 10]

[종전 제5조의2에서 이동 2020. 3. 25]

제6조의3(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7. 10. 10]

[종전 제5조의3에서 이동 2020. 3. 25]

제7조(대장비치) ① 지방세 징수부서는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장, 숨은 세원 발굴 과징대장,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장은 별지 제1호 서식, 제2호 서식, 제4호 서식, 제5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7. 10. 10〉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0. 3. 25]

제8조(지급신청) ① 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4조의 각 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10, 2020. 3. 25〉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 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7. 10. 10〉

④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동장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수권이 있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07. 10. 10, 개정 2020. 3. 25〉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0. 3. 25]

제9조(지급) ①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10, 2020. 3. 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8. 6. 16, 2017. 6. 20〉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0. 3. 25]

제10조(환수) ① 시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6, 2011. 6. 8, 2017. 6. 20>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0. 3. 25]

제11조(수당 및 지원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6. 16, 2011. 8. 9, 2018. 7. 31>

[본조신설 2007. 10. 10]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0. 3. 25]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0. 3. 25]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2007. 10. 10 조례 제15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6. 16 조례 제158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2. 31 조례 제17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1. 25 조례 제1731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⑱ 까지 생략

⑲ 광명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3호 서식 참조 란 중 “세무과장”을 “세정과장”으로 한다.

제5조의2제4항 중 “관련 업무담당”을 “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⑳ 부터 ㉑ 까지 생략

부칙 <2011. 6. 8 조례 제17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8. 9 조례 제1786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㉓ 까지 생략

㉔ 광명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㉕ 부터 ㉗ 까지 생략

부칙 <2013. 12. 12 조례 제1978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광명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기능직”은 삭제하고 “계약직”을 “임기제”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계약직”을 “임기제”로 한다.

부칙 <2014. 8. 14 조례 제2005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부터 ㉗ 까지 생략

㉘ 광명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재정경제국장”을 “고용경제국장”으로 한다.

⑬ 부터 ⑳ 까지 생략

부칙 <2017. 6. 20 조례 제2259호, 시세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개정 등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광명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2017. 6. 20 조례 제2260호, 시세 징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법령 개정 등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광명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2017. 6. 20 조례 제2263호,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7. 31 조례 제2372호,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8. 8. 30 제240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광명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고용경제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

⑫ 부터 ④⑩ 까지 생략

부칙 <2019. 12. 20 조례 제2560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광명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예산법무과장”으로 한다.

⑧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 <2020. 3. 25 조례 제25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07. 10. 10>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장

(단위 : 원)

징수 연월일	징수자		징수내역				체납자		담당 확인	비고
	직급	성명	연도	납기	세목	징수액	주소	성명		

※ 징수액은 지방세액만 기재하되, 천원 미만은 절사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07. 10. 10>

숨은 세원 발굴 과징대장

납기	부과자(제보자)			과목	구분	발굴납세의무자			징수 연월일	담당 확인	비고
	직급	주소	성명			세원	주소	성명			

※ 구분란에는 과표 초과, 미등기, 등기 1년 초과 내지 연초과, 무단점용 등을 표시할 것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1. 6. 8>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

수신 : 광명시장

발신 : ○ ○ 과장(동장) (인)

참조 : 세정과장

(단위 : 원)

구 분		건 수	금 액			포 상 금
			합 계	본 세	가 산 금	
합 계						
과년도 채납액 징 수	소 계					
	1년 경과					
	2년 경과					
	3년 경과					
숨 은 세 원 발 굴	소 계					
	미 등 기					
	탈루·은닉 세 원					
	무단점용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	세정발전					
	세입증대					
첨부 : 1. 과년도 채납액 징수내역 1부. 2. 숨은 세원 발굴 내역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07. 10. 10>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지 급 연월일	지 급 내 역				징 수 현 황					비 고
	소속	직급	성명	지급액	연도	납기	세목	징수액	체납자	

※ 징수액은 지방세액만 기재하되 천원 미만은 절사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07. 10. 10>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지 급 연월일	지 급 내 역				숨 은 세 원 발 굴 현 황						비 고
	소속	직급	성명	지급액	납기	과목	구분	세원	주소	성명	